

EY한영 월간 Public Policy Newsletter

2026년 5월호

발행일 | 2026년 5월 29일

In Focus

- + 금감원, 임원보수 공시서식 개정...올해 반기 보고서부터 '보수 성과 관계' 및 '주식기준보상' 설명 더 충실히 [\(바로가기\)](#)
- + 금감원, 자산운용사의 결권 행사 내역 점검 예고...공모 운용사는 내부 프로세스도 점검 방침 [\(바로가기\)](#)
- + SEC, 상장사 분기보고 대신 반기보고 선택제 도입 제안 [\(바로가기\)](#)
- + 미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 의무화 추진 지속...집행 일부 불확실성 속에도 기업들은 이미 대응 착수 [\(바로가기\)](#)
- + 뉴질랜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및 윤리독립성 기준 확정 발표...기업엔 "인증기준 따라 제대로 인증받았는지 밝힐 것" 주문 [\(바로가기\)](#)
- + 영국, 감사인을 위한 '생성형에이전트형 AI 도구 활용 지침' 공개...AI 확산 속 감사품질 리스크 관리 및 책임성 원칙 제시 [\(바로가기\)](#)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Contents

01	국내 업데이트	3
	1. 회계감사제도 및 기업회계기준	
	▪ 금감원, K-IFRS 제1118호 FY27 시행 대비 '주식공시 모범사례' 사전 공개	4
	2. 자본시장	
	▪ 금감원, 임원보수 공시서식 개정...올해 반기보고서부터 '보수-성과 관계' 및 '주식기준보상' 설명 더 충실히	5
	▪ 금감원,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법행위 엄단 경고...좀비기업 적시 퇴출 유도	7
	3. ESG·지속가능성	
	▪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 예고...공모 운용사는 내부 프로세스도 점검 방침	9

02 해외 업데이트 11

1. 해외 일반

- SEC, 상장사 분기보고 대신 반기보고 선택제 도입 제안 12
- EU, 감독당국 대상 은행 보고부담 대폭 완화 방침...데이터 포인트 50% 축소 추진 14
- 홍콩, 감사인 변경 관련 지침 강화...선임·해임·보수 결정에 '주주 승인 필수' 강조하고 '보수 이견' 핑계로 사임 유도하는 행위 근절 15

2. ESG·지속가능성

- 미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 의무화 추진 지속...집행 일부 불확실성 속에도 기업들은 이미 대응 착수 17
- 뉴질랜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및 윤리·독립성 기준 확정 발표...기업엔 "인증기준 따라 제대로 인증받았는지 밝힐 것" 주문 18
- 싱가포르, 상장사 최신 기후공시 현황 분석...30대 상장사 63%가 ISSB 기준 반영하고 70%는 외부 인증도 받아 19
- ISSB,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은 '실무서'로 개발 결정...올해 10월 초안 공개 예정 21
- EU, 'CBAM 인증서' 가격 첫 공개...'26년 1분기 수입품 탄소비용은 톤당 약 13만원 22

3. 기술·디지털

- 영국, 감사인을 위한 '생성형·에이전트형 AI 도구 활용 지침' 공개...AI 확산 속 감사품질 리스크 관리 및 책임성 원칙 제시 23
- 주요국 금융당국, '미토스' 등 최첨단 AI 기반 해킹 위협 대응 강화 24

03 주목할 간행물 25

01

국내 업데이트

금감원, K-IFRS 제1118호 FY27 시행 대비 '주석공시 모범사례' 사전 공개

4월 14일 금융감독원이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도입에 대비해 기업이 새로운 회계기준의 주요 영향을 사전에 공시할 수 있도록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발표](#)함. (본 뉴스레터 2024년 7월호 "금융위, '27년 시행 IFRS 18 도입 지원 방안 발표...현 영업손익 표시 방식 유지 검토" 참고)

배경

- '24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확정해 발표함.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이 포함된 회계기준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25년 12월 [공표](#)됨.
- 기존의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는 K-IFRS 제1118호는 '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적용이 허용됨.
- 기업은 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와 함께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이용자를 위해 '앞으로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등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의 영향을 2026년 재무제표에 미리 공시할 의무가 있음.

금감원이 공개한 모범사례는 ▲주요 회계정책 변경과 ▲주요 영향 평가로 구성됨.

주석공시 모범사례 구성

- 주요 회계정책 변경
 - 기업이 새롭게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정책 간 주요 차이점 등 회계정책 변경사항을 공시할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 변경 관련 내용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¹ 공시 관련 내용을 예시로 보여줌
- 주요 영향 평가
 - 영업손익의 변동과 그 원인, MPM 관련 사항, 영업활동현금흐름 변경 등 새로운 기준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을 기업이 분석한 정도에 따라 주석 공시할 수 있도록 예시로 보여줌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새로운 회계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임. 한편, 회계기준원은 K-IFRS 제1118호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논의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¹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예를 들어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 등 회사가 K-IFRS 제1118호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비회계기준 성과측정치를 추가로 공시하고자 할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됨.

금감원, 임원보수 공시서식 개정...올해 반기보고서부터 '보수-성과 관계' 및 '주식기준보상' 설명 더 충실히

In Focus

금융감독원이 임원보수와 기업성과 간 관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대해 개정된 공시서식을 시행한다고 [밝혔](#).

이번 서식 개정은 작년 11월 [발표](#)된 '기업 공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그간 제기된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최근 활용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¹ 등의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개인별 상세 내역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자가 보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함. (본 뉴스레터 2026년

1월호 "금융당국, 기업공시 개선안 발표...영문공시 확대하고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도 강화" 참고)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기존	개정
임원보수와 기업성과 간 관계 공시 내실화	기업성과와 보수 간 관계, 보수 산정근거 등의 공시 미흡	- 임원(이사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을 공시할 때 기업성과지표(영업이익, 총주주이익률(TSR) 등)를 함께 제시해야 함 - 필요시 지표를 추가할 수 있으며, 그래프 등을 활용해 임원보수와 기업성과 간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허용
주식기준보상 공시 강화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이외의 주식기준보상은 기업 전체 또는 대주주 부여 현황으로 별도로 공시되며,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은 공시되지 않음 - 스톡옵션: 임원보수 공시 서식에 포함됨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이 상이한 위치에 공시됨	-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개인별 보수총액을 공시할 때 각각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을 구분해 기재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서식 하단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기존 공시)' 표와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신설)' 표를 함께 배치
기타 서식 개정	당해 사업연도의 임원보수만 공시	3개 사업연도의 임원보수를 공시 - 임원 전체 보수총액을 소득 종류별²로 구분해 공시하는 서식 신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Restricted Stocks (RS): 근속연수나 성과 달성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양도 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²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외 주식기준보상,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중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반기보고서부터 개정된 서식을 적용해야 함.

금감원은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된 공시 내용을 점검해 기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정정하도록 하는 등 충실한 임원보수 공시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힘.



금감원,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법행위 엄단 경고...좀비기업 적시 퇴출 유도

4월 20일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함. 올해 초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폐지 위험에 노출된 부실기업의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

배경

- 금용위원회와 금감원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회계부정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해 옴. '25년 1월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 다음을 포함한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을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임. (본 뉴스레터 2025년 2월호 "금융위·금감원,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발표" 참고)
 - 시가총액·매출액 요건 기준 강화:** 코스피 기준 시총 요건을 50억원 → 500억원으로 10배 인상하고, 매출액 요건을 50억원 → 300억원으로 6배 인상하는 등,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 상향조정
 -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 이후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사업보고서 미제출도 포함) 시 즉시 상장폐지 등
- 이후 지난 2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부실기업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해 '25년에 조정한 상장폐지 기준 강화 주기를 다시 한번 앞당기고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고 **발표**함. (본 뉴스레터 2026년 3월호 "금융위·거래소, 코스닥 부실기업 상장폐지 개혁방안 발표...상폐 대상 기업 수 최대 220여 개 예상" 참고)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금액 상향조정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매반기 1회로 조기화¹	7월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공시위반 요건 강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즉시 상장폐지에 더해,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에는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결정	벌점 기준을 하향 조정²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

- 5월 13일 금융위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함.

실제로 금감원은 그간 재무구조의 실질적 개선 없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다수 적발한 바 있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당초 상향조정 계획: ('27.1월) 150억원 → 200억원, ('28.1월) 200억원 → 300억원
변경 후: ('26.7월) 150억원 → 200억원, ('27.1월) 200억원 → 300억원

² 기준: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
변경: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

주요 사례로는 ①회사 대표이사가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하여 허위의 자기자본을 확충한 사례, ②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여 상장폐지를 회피한 사례, ③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 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례, ④거래량 미달 관련 상장폐지 요건 회피를 위해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량을 늘려 단기 시세조종한 사례 등이 있음.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조사·공시심사·회계감리 부서 간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래와 같이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공시심사 강화 ▲회계감리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힘.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 집중 감시 및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 착수 대상:
 -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
 - 단기 시세조종 및 허위·과장 공시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여 일시적으로 상장폐지 요건(시가총액 미달, 소위 '동전주'로 불리는 일정 주가 미만 등)을 회피하는 행위
 -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연계된 부정거래 행위
 -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공시심사 강화

- 상장폐지 고위험군인 기업의 유상증자 및 조달자금 사용 등에 대한 공시심사 강화
 -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요건 회피 목적으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자배경, 자금 사용 목적, 투자위험요소 등 면밀히 심사
 -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을 관계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유용하는 경우, 해당 주요사항보고서(자산 양수 결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 시 정정명령
 - 유상증자와 자산양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등 의심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조사·공시심사·회계 부서 합동 대응

회계감리 강화

- 회계부정으로 연명하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밀착 감시 및 엄정 감리 실시
 - 부실징후 회사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심사대상 선정 규모를 '25년 대비 30% 이상 확대
 - 회계부정 고위험 회사를 선제적으로 심사 대상으로 선정
 -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발견 시 자본시장 조기 퇴출 유도 (엄정 감리 실시,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에 위반 혐의 내용 공유 등)

금감원은 이러한 대응방안을 통해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힘.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 예고...공모 운용사는 내부 프로세스도 점검 방침 In Focus

4월 14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 사이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내역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그 행사 내용을 공시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안내](#)함. 특히 올해는 이에 더해 자산운용사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있도록 내부에 적절한 체계를 갖추었는지도 점검할 방침임.

배경

- 그간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해옴.

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23.10월) (본 뉴스레터 2023년 11월호 12페이지 '그 밖의 단산' 참고)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의결권 행사 실무 관련 모범기준 부재	① 일반원칙 신설 의결권행사 정책·의사결정 체계 등 내부통제 모범기준 제시
주제별 편제	② 실무중심 편제 개편 단시간 내 참조가 용이하도록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전기재순서에 따라 편제 개편
법규와 권고사항, 원칙과 사례 불분명	③ 법규와 권고사항, 원칙과 사례 명확화 이사 선임요건 등 법규에서 정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부기하여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원칙적 판단기준과 구체적 고려요소 및 사례를 구분하여 제시
최신 사례 부족	④ 사례 보완 및 현행화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K-ESG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ESG 등 최신 사례 보강
의미·표현 모호	⑤ 의미·용어 정비 법령과 상이하거나 의미가 모호한 표현 명확화
가이드라인 활용도 저조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효용성 제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23년 개정 취지>

출처: 금융감독원

②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 점검

-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제87조\(의결권 등\)](#)에 따라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해야 함.
- 특히 펀드별로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한 상장사 주식에 대해서는, 전년 4월부터 당해 연도 3월 말 사이 해당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 등¹을 매년 4월 말까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함.

③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26.2월): 수탁자 책임 이행 제고 방안 논의

- 금감원은 올해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②)을 점검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펀드를 모집하므로 일반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공모 운용사의 경우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①) 등에 따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실제로 구축했는지도 점검할 방침임.

구체적으로 올해 금감원이 점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공시 내용: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 펀드별 소유 주식 수, 운용사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과와의 관계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점검

- **점검 대상:** '25.4.1.~'26.3.31. 기간 중 행사한 의결권 내역을 '26.4.30.까지 거래소에 공시한 공모 및 사모 자산운용사 500여 사
- **점검 항목:**
 -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내용¹
 - 내부지침 공시 내용
 -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점검

- **점검 대상:** '26.3월 말 기준 공모 자산운용사 77 사²
- **점검 항목:**
 - 의결권 행사 등을 포함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의결권 행사 기준, 구체적인 행사 지침 및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 구축 여부
 -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조직·인력 체계 마련 현황
 -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해상충 관리 여부 등

이번에 실시한 점검 결과는 오는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 운용사와 미흡 운용사 사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한 7월 중에는 자산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모범적인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¹ [미흡]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주주권리 침해 없음', '이사선임에 결격 사유 없음' 등 행사 사유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고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는 경우 [모범]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사하면서 그 근거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체 내규상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² 주식이 아닌 대체투자 운용사로서 의결권 공시 내역이 없는 등 점검 실익이 낮은 운용사와 일반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모운용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02

해외 업데이트

SEC, 상장사 분기보고 대신 반기보고 선택제 도입 제안

In Focus

5월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회사가 3개의 분기보고서 대신 1개의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 및 서식 개정을 [제안](#)함.

배경

- 현재 미국 증권거래법 및 SEC 규정에 의하면 상장회사는 분기별로 보고서(Form 10-Q)를 제출해야 함.
 - 이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3개의 분기보고서(10-Q)를 제출하고 마지막 분기는 4분기 보고를 통합한 연차보고서(10-K)를 제출하고 있음.
-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반기보고를 [제안](#)한 이후, SEC는 반기보고로의 전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반기보고 전환에 찬성하는 이들은 비용 절감, 장기 투자 강화 등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고 빈도 축소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됨.
 - CFA 연구재단¹이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07년에 반기보고 대신 분기보고를 의무화하고 '14년에 다시 의무를 폐지한 영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고 주기는 기업의 자본적 지출, 연구개발 지출 등 장기적 투자 수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분기보고 시 증권사 커버리지²와 실적 예측 정확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관찰됨. 영국 분기보고 폐지 이후 실제로 분기보고를 중단한 기업은 10% 미만이었으며 시가총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됨.

이번 제안에는 상장회사의 반기보고 선택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과 반기보고를 위한 Form 10-S 서식 도입이 포함됨.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존	개정(안)
• 분기보고서(10-Q)제출 - 연간 분기보고서 3개 + 연차보고서 1개 제출	• 분기보고서(10-Q)제출과 반기보고서(10-S)제출 중 선택 가능 - 연간 분기보고서 3개 + 연차보고서 1개 제출, 또는 - 연간 반기보고서 1개 + 연차보고서 1개 제출

반기보고 시 기존 분기보고서와 동일한 수준의 공시가 요구되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검토 수준의 인증의무가 유지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CFA Institute는 투자 및 재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비영리단체로 Chartered Financial Analyst(CFA) 자격을 포함해 다양한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 연구조직으로 CFA 연구재단(CFA Institute Research and Policy Center)을 두고 있음.

² 증권사가 특정 기업을 지속적으로 분석, 추적하면서 리서치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아래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보고 주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기업이 보고 주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 (예시)

- 분기보고 대비 반기보고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경영진 투입 시간
- 투자자의 기대
- 자본조달 비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 기업의 성장 단계
- 사업 모형의 특성
- 실적 발표, Form 8-K(긴급 수시 공시) 등 기타 공시 수단을 통한 최신 정보제공 여부
- 해당 기업에 대한 시장의 분석·평가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또한 기존에 분기보고 기준으로 설계된 재무제표 규정인 'Regulation S-X'도 반기보고 시에도 유효할 수 있게 하는 개정 내용이 이번 제안에 포함됨.

SEC 위원장은 보고 주기를 보다 유연하게 함으로써 상장회사의 공시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기업이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이번 제안은 상장회사의 지속적인 공시 의무와 공모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관련 SEC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설계하기 위한 보다 큰 정책적 노력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향후 수개월 내 위원회는 추가적인 개정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번 개정안은 5월 7일에 연방관보에 게재됐으며 7월 6일까지 총 60일 동안 의견수렴이 진행될 예정임.



EU, 감독당국 대상 은행 보고부담 대폭 완화 방침...데이터 포인트 50% 축소 추진

4월 10일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은행의 감독기관 대상 보고 간소화 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힘](#).

이번 방안은 2011년 EBA 출범과 함께 EU 차원의 표준화된 감독당국 대상 보고체계가 수립된 지 15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적 재검토로, EBA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유럽경제지역(EEA) 내 각 감독당국이 은행 및 지점을 대상으로 개별 은행 건전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정해진 형식으로 정보 보고를 요구한 건수는 도합 671건으로, 모든 은행에 걸쳐 제출 요구된 데이터 포인트(data point)¹ 총량은 97만 개 이상이었음. 이러한 배경에서 EBA는 감독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은행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보고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힘. 구체적인 방향성은 다음과 같음.

데이터 포인트 절반으로 축소

- EU 표준 감독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데이터 포인트 개수를 기존 대비 약 50% 축소
 - IFRS 18, ESG, FRTB² 등과 관련한 신규 항목 추가에도 불구하고 절반 수준이 되도록 조정

중복 보고 제거

- 유사한 성격을 가졌으나 제출 경로와 빈도, 프로세스가 분리되어 있던 다음 2개 보고체계를 정기보고 체계 내로 통합
 - 스트레스 테스트: 가상의 위기 시나리오에서 은행의 자본·손실 등을 추정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목적
 - 벤치마킹 데이터: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은행별 리스크 계산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은행 내부 리스크 측정 모형의 일관성 및 적합성을 검증하는 목적

소형 은행의 보고부담 추가 완화

- 소규모·비복잡 은행(SNCI³)에 대한 비례성 원칙을 강화해, 규모·복잡도 등에 따른 보고부담 차등화

회원국별 개별 보고 요구사항 투명성 강화

- EBA 및 각 회원국 개별 감독당국이 은행에 제출을 요구하는 데이터 종류를 모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공개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
 - 이를 통해 각국 감독당국이 서로 중복 요청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 가능
- 각 감독당국이 데이터를 요청할 때 중복을 줄이고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EBA가 '감독기관 데이터 요청 모범사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이 확정되면 2027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¹ 보고서 양식에서 하나의 칸(cell)에 들어가는 값 1개

² 바젤 III에서 시장리스크에 노출된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산정하는 기준(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

³ small and non-complex institutions

홍콩, 감사인 변경 관련 지침 강화...선임·해임·보수 결정에 '주주 승인 필수' 강조하고 '보수 이견' 핑계로 사임 유도하는 행위 근절

4월 17일 홍콩 증권거래소(HKEX)가 일부 기업들이 보고기간 말에 감사보수에 대한 이견 등을 이유로 외부감사인 사임을 유도하는 관행을 근절하고자 상장규정 내 '감사인 선임·해임 및 보수' 관련 조항에 관한 해석지침을 **개정**함. 개정 지침은 감사인 선임 또는 재선임 시 사전 합의된 감사보수와 산정 근거를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해야 하며, 감사인 사임을 요청 또는 유도하는 경우 '해임'으로 간주되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배경

- 3월 18일 HKEX의 감독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SFC)가 HKEX의 '24년 규제 활동 성과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특히 외부감사인 교체 관련 부적절한 관행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됨.

현행 제도 및 관행

- HKEX 상장규정상 상장회사는 감사인 선임, 해임, 보수 결정에 대해 주주 승인을 받아야 함.
- 그러나 HKEX의 상장규정 해석지침상으로는 감사인이 사임한 경우 주주 승인 없이 대체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감사보수 또한 주주총회 후 확정하는 방식이 허용됨.
- 일부 기업들이 보고기간 말에 감사인 사임을 요청 또는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흔한 사임 사유는 감사보수에 대한 이견이었음.¹
 - '24년 연차보고서 공시 기한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사임한 사례는 총 89건
 - 그 중 66건이 감사보수 관련 이견을 이유로 제시

SFC 분석 및 권고사항

- SFC는 보고기간 말 갑작스러운 감사인 사임 시 신규 감사인이 연차보고서 공시 기한에 맞춰 감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을 받게 되어 감사품질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함.

공시 기한 미준수	20개사(89건 중 22.5%)
신규 감사인 선임 후 3개월 이내 감사 완료	35개사(39.3%) (그중 11개사: 2개월 이내)
신규 감사인 한정이견 표명	13개사(14.6%)
전기 감사인 한정이견 → 신규 감사인 적정이견	4개사(4.5%)

<'24년 홍콩 외부감사인 사임 사례 분석 결과>

- 이에 HKEX가 관련 지침을 개정해 ▲회사가 감사인에게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주주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감사보수로 인한 사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합의를 권장할 것을 권고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보고서는 중요한 감사 관련 이슈로 사임하는 경우에도 표면적으로는 감사보수를 이유로 공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함.

HKEX [상장규정](#) 부록 A1(핵심 주주 보호 기준)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감사인 선임, 해임, 보수에 대한 결정은 주주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이사회로부터 독립된 다른 기구¹의 승인을 받아야 함. HKEX는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 지침(FAQ 16 - No.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개정 전		개정 후	
감사보수	상장회사가 정관에 외부감사인의 보수를 주주총회 보통결의²로 의결하거나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정한 다른 방법³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한 경우, 상장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봄.	(좌동) - 단,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감사인과 합의를 통해 도출한 해당 보고연도 예상 감사보수를 명시해야 하며, 특정 액수 또는 범위로 기재할 수 있음. - 회사는 또한 감사인과의 협의 시 논의된 보수 산정의 근거와 가정(예: 기업 구조의 복잡성, 사업계획, 예상 감사 범위, 감사 수행 일정, 필요 인력 및 자원)에 대해 설명해야 함. - 예상 감사보수는 회사와 감사인 간 합의하에 해당 시점에 파악 가능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고려해 도출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함. 따라서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된 근거 또는 가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참고서류에 기재된 예상액과 주주총회 후 확정된 보수 간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됨.	
감사인 사임	상장회사가 정관에 외부감사인 사임 시 이사회가 대체 감사인을 선임하고, 대체 감사인이 다음 정기주총까지 감사 업무를 수행한 후 재선임될 자격을 부여하도록 명시한 경우, 상장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봄.	(좌동) - 단,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해임하는 대신 감사인이 사임하도록 요청 또는 유도하는 것은 감사인 해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주 승인을 받아야 함. - 감사인 사임 요청 또는 유도 행위에는 감사인에게 사전에 합의된 감사보수를 현저하게 낮추도록 직접 요구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더 낮은 입찰가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경우 등이 포함됨.	

홍콩 회계감독기관인 회계재무보고위원회(AFRC)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보수 책정 관련 부적절한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작년 7월 31일에는 관련 **모범관행**을 발표함. (본 뉴스레터 2025년 10월호 “홍콩 AFRC, 감사인 선임·보수 모범관행 발표...저가 감사보수는 감사품질에 심각한 위협” 참고) AFRC는 특히 회사가 비적정 감사의견 회피, 중요한 감사 발견사항 은폐 등의 목적으로 감사인의 갑작스러운 사임을 유도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감사의견 구매(opinion shopping)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한 바 있음.

HKEX의 이번 지침 개정은 이와 같은 관행을 가능하게 한 규정상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¹ 상장기업에서는 그 예로 이원적 이사회 구조를 가진 기업에서 경영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경영진을 감독하는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를 두고 있음.

² 홍콩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에 따르면, 보통결의는 주주총회에서 행사된 의결권 기준 5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특별결의는 75%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함. 우리나라는 상법상 대부분의 안건은 보통결의(출석주주의결권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 1/4 이상의 찬성)로 처리되며, 정관변경, 자본감소, 이사 해임 등은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 2/3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1/3 이상의 찬성)를 필요로 함.

³ 이사회에 감사보수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사례가 있었음.

미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 의무화 추진 지속...집행 일부 불확실성 속에도 기업들은 이미 대응 착수 In Focus

5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기후 공시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시행규정이 주 행정법 심사기관(OAL) 심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됨. 지난 2월 26일 CARB가 해당 규정을 [채택](#)한 이후 후속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기후 공시 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함.

배경

-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미국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되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활동을 영위¹하는 기업에 대해 글로벌 매출 규모에 따라 다음 2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함. (본 뉴스레터 2025년 11월호 “미 캘리포니아, '26년 시행 기후공시법 적용 대상 공개...국내 기업도 작간접 공시 부담” 참고)
 - **기업기후정보책임법(Senate Bill 253):** 직전 회계연도 매출 10억 달러 초과 (시행 중)
 - ▶ '26년에 공시하는 보고서부터: 직전 회계연도의 스코프 1·2 배출량 공시
 - ▶ '27년에 공시하는 보고서부터: 직전 회계연도의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 ▶ '26년에 공시하는 보고서부터 단계적 인증 의무화²
 - **기후관련재무위험공시법(Senate Bill 261):** 직전 회계연도 매출 5억 달러 초과 (소송으로 일시 중단 중)
 - ▶ 2년마다 기후 관련 재무위험 보고서를 공시 ('26.1.1.까지 보고서를 최초 공시해야 함)
- '24년 1월 미국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SB 253 및 SB 261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반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5년 8월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 그러나 원고는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 기간 중 법 시행 중단을 요청했으며, '25년 11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SB 253은 그대로 시행하되 SB 261의 시행은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림.

이번 시행규정은 SB 253과 SB 261에 따른 요구사항을 실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인프라를 만드는 규정으로, SB 253에 따른 최초 보고연도의 공시 기한을 오는 8월 10일로 명시하고 있음. CARB는 SB 261과 관련해서는 “법원명령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120개 이상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개적으로 [열람](#)³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

항소심 결과에 따라 SB 261의 시행 여부와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나, 제도적 기반 구축과 자발적 공시 확산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의 기후 공시 의무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¹ 지난해 11월 업데이트된 CARB의 [FAQ](#)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활동을 영위(doing business in California)”하는 기업이라 함은 ▲캘리포니아 내에 설립되었거나 ▲캘리포니아 내 물리적 사업장이 없더라도 회사의 주요 사업 및 경영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요 근거지가 캘리포니아인 경우 ▲캘리포니아 내 매출이 약 73만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등, FAQ 내 설명된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만 충족하여도 해당됨.

² ▲스코프 1·2: 2026년에 공시하는 보고서부터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으로 시작해 2030년에 공시하는 보고서부터는 합리적 확신 수준의 인증 의무화 ▲스코프 3: 2030년에 공시하는 보고서부터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 의무화

³ 기업들이 TCFD 기반 보고서 등 기존의 ESG 보고서를 CARB 포털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법 집행정지 상태이므로 반드시 SB 261 요건을 엄격히 충족한 보고서는 아닐 수 있음.

뉴질랜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및 윤리·독립성 기준 확정 발표... 기업엔 "인증기준 따라 제대로 인증받았는지 밝힐 것" 주문

In Focus

3월 12일 뉴질랜드 외부보고위원회(XRB)가 “국제표준 지속가능성 인증 및 윤리 기준과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도적 지지의견”을 바탕으로 자국 지속가능성 인증기준과 인증인의 윤리 및 독립성에 관한 기준을 정식 공표한다고 **밝힘**. 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다음과 같음.

ISSA (NZ) 5000

- 뉴질랜드 채택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26.12.15.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부터 시행¹

개정 Professional Ethical Standard 1

- 뉴질랜드 채택 ‘인증인을 위한 국제윤리기준 (국제독립성기준 포함)’
- 뉴질랜드 채택 ‘외부 전문가의 업무 활용에 대한 국제윤리기준’²
- ‘26.12.15.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부터 시행

뉴질랜드는 지난 2021년 대형 금융기관과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기후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해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부터 공시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해 2022년 12월 기후 공시기준을 확정함. (본 뉴스레터 2021년 11월호 “뉴질랜드, 기후 관련 공시법 제정 - ‘금융섹터 기후 공시 의무’ 법제화한 첫 국가” 및 2022년 8월호 “뉴질랜드 XRB, 기후 공시기준 최종 의견수렴...올해 12 월 기준 확정” 참고) 또한 공시기준을 확정함과 동시에 인증에 관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제3자 인증체계 구축에 앞장선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3년 1월호 “뉴질랜드, ‘기후 공시 인증’ 의견수렴 실시...인증인 자격제 및 인증 범위 확대 논의” 참고) 인증의무는 2024년 10월 이후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최초로 발생³함.

이와 같은 선제적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5월 26일 뉴질랜드 금융감독국(FMA)은 “(기후 공시 의무화 이후) 두 번째 보고연도에 제출된 62건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양한 산업에 걸쳐 고무적인 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들의 실질적인 노력이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함.

FMA는 특히 앞으로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은 “공시의 양이나 복잡성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정보이용자에게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에 초점을 맞추도록 접근 방식을 정교화하는 데 있다”고 밝히면서, 핵심적인 개선 필요사항 중 하나로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할 때 “인증업무 수행 시 인증기준이 준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인증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등 인증 관련 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더 완전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¹ 이에 따라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인증에 사용되고 있는 임시 인증기준인 ‘NZ SAE 1’과 ‘ISAE (NZ) 3410’은 올해 12월 15일 이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부터 폐지되나, 경과규정에 따라 12월 15일 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까지는 계속 적용됨.

² 재무제표 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인이 보험 계리사, 탄소 측정 전문가 등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 해당 전문가가 활용 목적에 적합한 지식, 역량,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야 함. (본 뉴스레터 2025년 1월호 “IESBA, 지속가능성 인증인 윤리기준 ‘IESSA’ 공표...인증기준과 동시 시행” 참고)

³ 스코프 1, 2 배출량에 대해 임시 인증기준 NZ SAE 1을 적용함.

싱가포르, 상장사 최신 기후공시 현황 분석...30대 상장사 63%가 ISSB 기준 반영하고 70%는 외부 인증도 받아

4월 10일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와 싱가포르국립대(NUS)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센터가 SGX 상장사들의 기후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분석 결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CFD) 권고안 기반 기후 공시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체제로의 전환 준비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싱가포르 기후 공시 제도

- 싱가פור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FY22부터 FY24까지 TCFD 기반 기후 공시 제도¹를 시행했으며, FY25 부터는 ISSB 기준 기반 기후 공시²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

공시 및 인증 요구사항	SGX 상장사			대형 비상장사 (연매출 S\$10억, 총자산 S\$5억 이상)
	STI³ 구성 종목 (상위 30개사)	기타 종목		
		시총 S\$10억 (약 1조원) 이상	시총 S\$10억 미만	
스코프 1·2 배출량	FY25			FY30
기타 ISSB 기반 기후공시	FY25	FY28	FY30	
스코프 3 배출량	FY26	자발적 공시	자발적 공시	자발적 공시
스코프 1·2 외부 인증 (제한적 확산 수준)	FY29			FY32

<싱가포르의 ISSB 기준 기반 기후 공시 의무화 [로드맵](#)>

이번 보고서는 2025년 7월 31일 기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한 총 499개 SGX 상장사의 최신 기후 공시 내용을 분석함.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전반적인 TCFD 공시 현황

- 분석 대상 기업의 99%가 TCFD 권고안의 11개 공시항목 중 최소 1개 이상 공시
 - 공시항목 중 10개 이상 공시한 기업 비율은 62%
 - 11개 항목을 모두 공시한 기업 비율은 36% (전년 대비 8%p 증가)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모든 상장사는 FY22부터 원칙준수·예외설명(CoE) 방식으로 TCFD 기반 기후 공시를 이행해야 했으며, 금융·농업·식품·임업, 에너지 산업 상장사는 FY23, 원자재 및 건설, 운송업은 FY24에 TCFD 기반 공시가 전면 의무화되었음.

²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준뿐 아니라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중 기후 관련 요구사항도 적용해야 함.

³ Straits Times Index(STI): SGX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및 유동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30개 종목 지수

TCFD 4대 축별 주요 분석 결과

- '거버넌스', '지표 및 목표' 부문 공시율은 각각 98%로 가장 높은 수준
 - 기업들이 기후 공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견고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측정 가능하며 의미 있는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함.
 - '지표 및 목표' 부문의 경우, 스코프 1, 2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율은 각각 87%, 93%로 높게 나타났으나, 스코프 3 공시율은 37%에 불과해 데이터 확보와 가치사슬 내 협력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함.
- 다음으로 공시율이 높은 부문은 '전략' 부문(92%)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4%p)으로 증가함.
 - 더 많은 기업들이 거버넌스와 지표 구축을 넘어, 기후 관련 요소를 전략에 내재화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줌.
- '위험 관리' 부문 공시율(90%)은 전년 대비 12%p 증가함.
 - 기후 관련 위험 식별·평가·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공시율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기후 관련 위험을 전사적 위험관리체계에 통합했다고 공시한 비율은 62%에 불과했음.

ISSB 기준 반영¹ 비율

- STI 구성 종목: 2025 회계연도부터 상장사에 ISSB 기준 기반 공시 의무가 단계적으로 적용됨에도, STI 구성 종목 중 63%가 ISSB 기준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종목: 시가총액 10억 싱가포르달러(S\$) 이상 기업의 45%, S\$10억 미만 기업의 15%가 ISSB 기준을 반영함.

외부 인증

- STI 구성 종목: 70%가 외부 인증을 받음.
- 기타 종목: 시가총액 S\$10억 이상 기업의 34%, S\$10억 미만 기업의 1%가 외부 인증을 받음.

상장사들은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동시에 공시해야 하며,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외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할 수 있음.

이번 공시 현황 분석 결과, 상장사의 69%가 이미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동시에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후 공시 규제 방향이 시장 전반에 걸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¹ ISSB 기준 반영 비율은 보고서에서 ISSB 기준을 고려했거나, 이와 일관성 있게 작성했거나, 도입 후 초기 단계에 있다고 공시한 기업의 비율을 의미함. 이는 반드시 ISSB 기준을 전면적으로 채택했거나 완전히 준수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ISSB,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은 '실무서'로 개발 결정...올해 10월 초안 공개 예정

4월 22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새로운 기준서가 아닌 지침 성격의 '실무서(Practice Statement)'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기준상 기업이 이미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자연 관련 정보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침을 통해 관련 공시를 지원하겠다는 것.

자연 공시 요구사항 개발 과정

- '25.11월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TNFD [권고안](#)¹에 기반해 개발하기로 결정 (본 뉴스레터 2026년 1월호 "ISSB,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 개발 방침...올해10월 초안 공개 목표" 참고)
- '26.4월 4월 정례회의에서 스태프(staff) 권고안에 따라 해당 요구사항을 '실무서' 형태로 개발할 것을 결정
- '26.10월 (예정) 실무서 공개초안 발표

- 스태프 [권고안](#)에는 ①IFRS S1 개정 ②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개정 ③신규 기준서로 개발 ④IFRS 실무서로 개발 등 네 가지 접근법의 장단점과 그중 실무서 개발을 권고한 이유 등이 제시됨.
 - 이에 따르면 실무서 개발 시 ▲별도 문서로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의 가시성 및 중요성을 높이고 ▲IFRS S1과 S2의 이행 및 도입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며 ▲현 시점에서 ISSB가 새로운 주제별 기준서를 도입하기보다는 IFRS S1 이행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ISSB 기준 체계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실무서 개발 방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자발적 적용

- 기업들이 IFRS S1에 따라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할 때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각국 선택에 따라 의무화할 수도 있음.
- 자연 관련 공시를 할 때 이 실무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수했다고 표명할 수 있음.

의견수렴 등 ISSB 기준 제정 절차는 그대로 적용

- 공개초안 발표 후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실무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할 방침임.
- 실무서를 발행하더라도 추후 실무서에 대한 피드백 등을 고려해 신규 공시기준으로 승격해 채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음.

엠마뉴엘 파베르(Emmanuel Faber) ISSB 위원장은 "자연 관련 공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IFRS S1에서 이미 요구하고 있는 정보로 실무서는 기업이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¹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NFD)는 2023년 9월 자연 관련 재무공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EU, 'CBAM 인증서' 가격 첫 공개... '26년 1분기 수입품 탄소 비용은 톤당 약 13만원

EU가 수입 제품에도 탄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수입분에 적용될 'CBAM 인증서' 가격을 분기별로 책정하기로 결정하고 4월 7일 1분기 가격을 [공개](#)함. 올해 1분기 수입분에 대한 인증서 가격은 이산화탄소환산톤(tCO₂e)당 75.36유로(약 13만원)로 책정됨.

배경

- '26년 1월부터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EU 역외에서 생산된 CBAM 적용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업자에게는 해당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내재배출량)¹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 의무가 부여됨. (본 뉴스레터 2023년 5월호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최종 승인...특정 제품 EU로 수출 시 10월부터 배출량 보고 필수" 참고)
 - CBAM 적용 대상 품목: ①철강 ②전력 ③비료 ④시멘트 ⑤알루미늄 ⑥수소
 - ①철강, ③비료, ④시멘트, ⑤알루미늄 품목은 연간 50톤 미만 수입업자는 CBAM 신고 및 인증서 제출 의무가 면제됨. (본 뉴스레터 2025년 7월호 "EU, 'CBAM' 규제 완화 입법 마무리 단계...전력·수소 제외하고 연간 50톤 미만 수입자는 면제" 참고)
- CBAM 규정상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되어 EU 탄소배출권(EU Allowance, EUA) 거래 가격²의 주간 가중평균으로 산정되나, '26년에 한해 분기별 가중평균이 적용됨.
 - 인증서 1개는 내재배출량 1톤에 해당함. 수입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인증서 수량은 수입한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EU ETS 무상할당분과 EU 역외 국가에서 기 부담한 탄소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 부분 감액되어 결정됨.
 - ETS 무상할당은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34년 전면 폐지될 예정으로, 이에 비례해 CBAM 인증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U의 수입업자는 2026년 수입분의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2027년 2월 1일부터 공통 중앙 플랫폼을 통해 구매해야 함. 당해 연도 수입품에 대한 CBAM 신고서 및 인증서는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수량의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배출량 1톤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또한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직전 연도 초과배출량에 상응하는 수량의 인증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각 분기별 수입분에 적용될 인증서 가격은 해당 분기 종료 후 첫 번째 주에 공개되며, 2027년 수입분부터는 주별로 인증서 가격을 책정해 적용할 예정임.

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 의무는 수입업자에게 있으나 해당 비용이 결국 수출업체에 전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업 자문 및 설비 투자 지원책을 [발표](#)하고 CBAM 실무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음. (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환경부, CBAM 도입 지원방안 발표...자문 및 설비 투자 제공 등 15건 포함" 및 4월호 "정부·생기원, EU CBAM 확정기간실무 매뉴얼 발간" 참고)

¹ 해당 제품 생산 시 배출된 탄소 총량으로,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을 모두 포함함.

² 현재 EU 탄소배출권은 톤당 70유로 중후반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음. (출처: [EUA Futures Pricing](#))

영국, 감사인을 위한 '생성형·에이전트형 AI 도구 활용 지침' 공개... AI 확산 속 감사품질 리스크 관리 및 책임성 원칙 제시 In Focus

3월 30일 영국 금융감독당국 재무보고위원회(FRC)가 감사업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AI 에이전트¹ 도구를 활용할 때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함. FRC에 따르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감사인 규제당국이 마련한 최초의 AI 활용 가이드스임.

이 지침은 감사업무에 AI 도구가 활용될 때 ▲AI 결과물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 ▲AI 결과물을 사람이 오용할 가능성 ▲AI 도구를 포함해 설계한 감사방법론이 감사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 등 감사품질 측면의 위험을 회계법인이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가이드를 제시하는 한편, 어떻게 하면 감사업무의 품질 및 효율 향상 등 기술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음. 특히 다음 두 가지 예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함.

활용 예시 1: 이사회 의사록 요약 작업

- 감사인이 피감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잠재적 위험 징후를 식별하기 위해 위험평가의 일환으로 기업의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사례
 - 어디까지나 감사인이 관련성이 높은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적 역할이며, 감사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식별할 가능성을 높여 감사인의 위험평가 업무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임.
 - AI가 의사록 내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할 가능성, 환각(hallucination) 현상으로 인해 의사록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꾸며낼 가능성과 대응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함.

활용 예시 2: 계약서 검토 작업

- 감사인이 수익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인식되었는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수익 왜곡 위험이 더 높은 '고위험 계약'을 테스트 표본으로 식별하는 사례
 - 업로드된 계약서를 분석하여 사전 정의된 위험 지표(예: 변동대가, 장기계약 등)에 따라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계약의 위험 수준을 평가한 후 감사인이 테스트할 표본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 전체를 예시로 설명함.
 - AI가 계약 내용을 잘못 추출하거나 위험 지표를 부정확하게 식별할 가능성,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결과 해석 과정에서 감사인이 AI 산출물을 과도하게 신뢰할 위험 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통제 및 검토 필요성이 함께 고려됨.

FRC는 기술이 진화하더라도 규제 체계의 근본 원칙은 변하지 않으므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책임이 규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감사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궁극적인 책임은 언제나 인간(회계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함.

¹ 생성형 AI가 사용자의 입력에 반응하여 '대답'하는 AI라면, AI 에이전트는 특정 목표를 기반으로 상황을 인식·판단해 사람 대신 일을 '실행'하는 주체임. 예를 들어 '이메일 에이전트'는 온라인 미팅 중 대화 분석 기능을 통해 주요 논의사항을 파악하고 회의 종료 후 이를 자동으로 요약해 이메일 초안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싱가포르, 스스로 실행하는 '에이전트 AI' 거버넌스 모델 제시...AI 자율성 관리 가능한 범위로 제한 강조" 참고)

주요국 금융당국, '미토스' 등 최첨단 AI 기반 해킹 위협 대응 강화

미국 앤트로픽(Anthropic)사의 '클로드 미토스(Claude Mythos)' 등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들이 주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 경로까지 설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주요국 금융당국이 이를 악용한 사이버보안 위협 가능성 및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4월 7일 앤트로픽사의 미토스 프리뷰 버전 [발표](#) 후 미국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주요 은행 CEO들을 긴급 소집해 보안 리스크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짐. 또 다른 [보도](#)에서는 한국, 홍콩, 호주,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각국 금융당국도 미토스로 인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복원력 테스트 프레임워크 개발, 모니터링 강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해짐.

배경

- 영국 AI 안전연구소(AISI)의 [분석](#)에 따르면, 프론티어¹ AI 모델의 사이버 작업 수행 능력은 '24년 말부터 '26년 2월까지 4.7개월마다 2배 강화된 것으로 추산되며, 각각 올해 4월 초와 말에 발표된 앤트로픽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와 오픈AI 'GPT-5.5' 모델은 이 성장 속도를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됨.
 - 전문가 수준 사이버 공격 역량 평가에서 [미토스 프리뷰](#)는 평균 68.6%, [GPT-5.5](#)는 평균 71.4%의 높은 통과율을 보였으며, 특히 이전 어떤 AI 모델도 통과하지 못한 32단계 기업 네트워크 침투 시뮬레이션인 일명 "The Last Ones" 과제를 두 모델 모두 성공해 자율적 사이버 공격 실행 능력이 입증됨.²
- 이와 같은 사이버보안 관련 리스크를 고려해 양사는 최신 모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 앤트로픽: '[프로젝트 글래스윅\(Project Glasswing\)](#)'을 통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50여 개 기업 및 기관에만 미토스 프리뷰 버전을 제공해 보안 결함을 파악하고 보완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오픈AI: ▲해킹 등 악용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적용한 일반 모델을 배포하고 ▲'[신뢰 기반 사이버 접근 프로그램\(Trusted Access for Cyber, TAC\)](#)'을 통해 검증된 기업 고객 및 사이버보안 실무자에게는 안전장치를 일부 해제한 버전을 제공하며 ▲사이버보안에 특화된 모델(GPT-xx-Cyber)은 선별된 일부 파트너사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미토스 공개 후 금융당국이 금융권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 금융권 대상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을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4일 3만여 개사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대상으로 보안 대비 태세 점검을 요청한 데 이어, 4월 말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비를 위한 기업 대응 요령 및 CEO 행동 수칙을 [배포](#)함. 또한 5월에는 앤트로픽사와 AI 및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픈AI사와는 TAC 소개, 최신 AI 모델 시연, AI 보안 관련 협력 방안 논의 등을 위한 실무 연수회를 [개최](#)함.

¹ Frontier는 '극한, 최첨단, 최전선'을 뜻하며, 프론티어 AI는 이전 세대 AI를 뛰어넘는 복잡하고 정교한 기능을 보유한 AI 시스템으로서 인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모든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범용 AI로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² 다만 발전소 등 산업제어시스템(ICS) 공격 시뮬레이션 과제를 완수한 모델은 아직 없으며, AISI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이루어진 만큼 실제 배포 모델의 기능과 기업 보안망 등이 완벽히 구현되지는 않았다고 밝힘.

03

주목할 간행물



EY: How to achieve cyber resilience in an era of AI-enabled offense



EY가 AI로 인해 사이버 공격 방식 및 규모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위협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행함.

기업들은 현재 AI 자체에 대한 위협, 즉 학습 데이터 오염, 모델 탈취 등의 위협에 처한 동시에, AI를 활용해 시스템 취약점을 파악하고 공격 경로를 생성하는 사이버 공격 위협에도 직면하고 있음.

보고서는 기업들이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 등 기본 통제 강화 ▲설계 단계부터 보안 내재화 ▲AI 기반 방어 도입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구축 ▲전사적 위험관리 체계로의 통합 ▲공격자 관점 테스트(hack yourself first)를 통한 선제적 취약점 점검 등을 핵심 축으로 하는 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EY: How do you build a security roadmap for a shifting AI terr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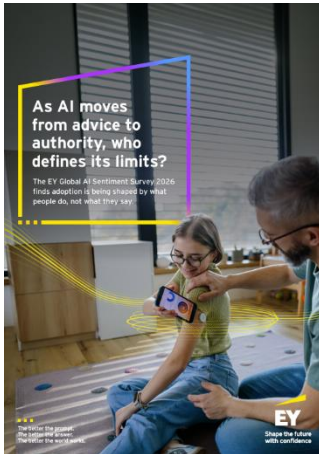


EY가 미국 내 매출 5억달러 이상 기업의 정보보안책임자 5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에 대한 인식과 모범관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이에 따르면 AI는 사이버 방어의 필수적 요소인 동시에 복잡한 위협을 새롭게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보안책임자들은 기업들이 자율형 방어 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나, AI의 진화 속도를 고려할 때 경영진의 투자 수준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함. 다만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AI 사이버보안 솔루션에 대한 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음.

EY는 이번 조사의 시사점으로 사이버 위협의 발전 속도가 투자 속도보다 빠른 만큼 AI 기반 사이버보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강화하고, 에이전트형 AI를 핵심 보안 기능에 통합할 필요성을 제시함. 또한 AI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인간의 감독 및 개입과 관련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거버넌스 체계는 AI 기반 사이버보안의 신뢰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반임을 강조함.

EY: As AI moves from advice to authority, who defines its limits?



EY가 전 세계 23개 시장에서 약 2만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AI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AI가 단순히 질문에 대한 응답, 문제 해결 등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 인간의 개입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자율형 AI'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함.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6%가 지난 6개월 이내 자율형 AI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활용 방식으로는 상품 구매(10%), 주기적 수요 예측 기반의 장비구입 자동 리필 및 구매(11%), 재무 관리 및 은행 업무 수행(11%), 자율주행 차량 이용(9%) 등이 언급되었음.

이와 같이 인간에서 시스템으로 의사결정 권한이 점점 더 이동함에 따라, 보고서는 조직의 리더들이 이미 신뢰가 형성된 영역에서는 AI의 권한을 확대하되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도입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담당자 안내

EY한영 Public Policy팀

이동근 부문대표 (파트너)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대표, Public Policy 리더

dongguen.lee@kr.ey.com

Public Policy 뉴스레터 편집팀: 김양희 팀장, 권혜숙 차장, 강태은 과장

EY한영 ESG Impact Hub

박재흠 파트너

EY한영 ESG Impact Hub 리더, 감사부문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 서비스 리더

jaeheum.park@kr.ey.com

뉴스레터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품질관리실 회계기준 김동길 파트너 품질관리실 감사기준 및 제도 정연웅 파트너

I 제작 EY한영 Public Policy 팀 (ey.pp.team@kr.ey.com)

I 뉴스레터 구독 신청 담당 EY 파트너 문의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6 EY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

